선 거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영남사이버대학교(이하 “본대학”이라 한다)학생 회칙 제11조에 의한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 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2.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 낙제없이 평균 B^0(3.0) 학점 이상인 자
3. 학칙 위반으로 근신 이상의 징계와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상황이 양호한 자
5. 본교 재 입학, 편입 또는 입학 이전 타대학 재학 사실이 없는 자

제 4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② 선거는 연립후보(런닝메이트)제로 한다.

제 5조(선거시기) 선거는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체되는 단 시일내에 실시한다.

제 6조(선거관리비용) 선거관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개정2025.06.24.〉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7조(구성 및 시기)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둘 수도 있다.〈개정2025.06.24.〉

② 선관위는 대의원의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학생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과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구성하여 학생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관위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지도위원 3명을 둘 수 있다.
④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하고 당선자 공고 후 자동 해체된다.

제 8조(기능) 선관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일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제 9조(의결) ① 선관위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 추진상의 유권해석은 학생지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선거일 공고) 선관위는 위원장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11조(선거인 명부작성) ①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현재의 재학생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 당일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개정2025.06.24.〉
② 선거인 명부에는 학과, 학년, 학번,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장 후보등록

제12조(후보등록) ① 총·부학생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서 1부〈개정 2025.06.24.〉
3. 서약서 1부(소정양식)
4. 〈삭제 2025.06.24.〉
5. 명함판 사진 1매 〈개정 2025.06.24.〉
6. 〈삭제 2025.06.24.〉
7.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학과장 추천서 1부. 〈개정 2025.06.24.〉

제13조(자격심사) 선관위는 후보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삭제 2025.06.24.〉

제 5 장 투·개표 및 당선자 발표

제18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제19조(투표방법) ① 선관위에서 작성한 투표용지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한다.〈개정 2025.06.24.〉
② 학생들(선거인)이 로그인을 하면 선거용 투표화면(창)이 뜨면서 100%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③ 투표의 자동집계는 전산관리실의 담당자가 진행한다. 〈개정 2025.06 24〉
④ 동집계 담당자는 투·개표 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 기타 어떠한 방법이던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06.24.〉

제20조(집계) 집계는 투표 완료 즉시 선거담당자 입회 하에 집계한다. 〈개정 2025.06.24.〉

제21조(투표의 효력) 투표는 자동으로 1인 1표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상망의 부득이한 문제로 인한 무효화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투표의 유/무효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22조(당선결정) ① 선관위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성적, 평점 및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

제23조(당선인 공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3일 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선인을 공고해야 한다.

제 6 장 벌칙·재선거·보궐선거

제24조(벌칙)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후보자격 박탈(등록 취소) 또는 당선취소를 할 수 있다.
1. 금전·금품을 배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폭력·협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4. 추천서 기타 선관위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5. 타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했다고 인정되거나 선거규정 또는 선관위의 지시와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5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는 경우
2. 선거가 무효인 경우
3.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제26조(보궐선거) 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다만, 임기만료 180일 미만일 때에는 보선치 않는다.

제 7 장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제27조(이의신청) 입후보자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처리) 선관위는 이의신청한 내용이 선거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될 때 선관위에서 조사 심의한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선거 또는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9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30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5년 6월 24 일부터 시행한다.